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2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관하여

“본 뉴스레터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규제 리포트’와 환경규제 전문가이자 제19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신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님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 리포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시대의 新보호무역 관세 규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1. EU『탄소국경조정제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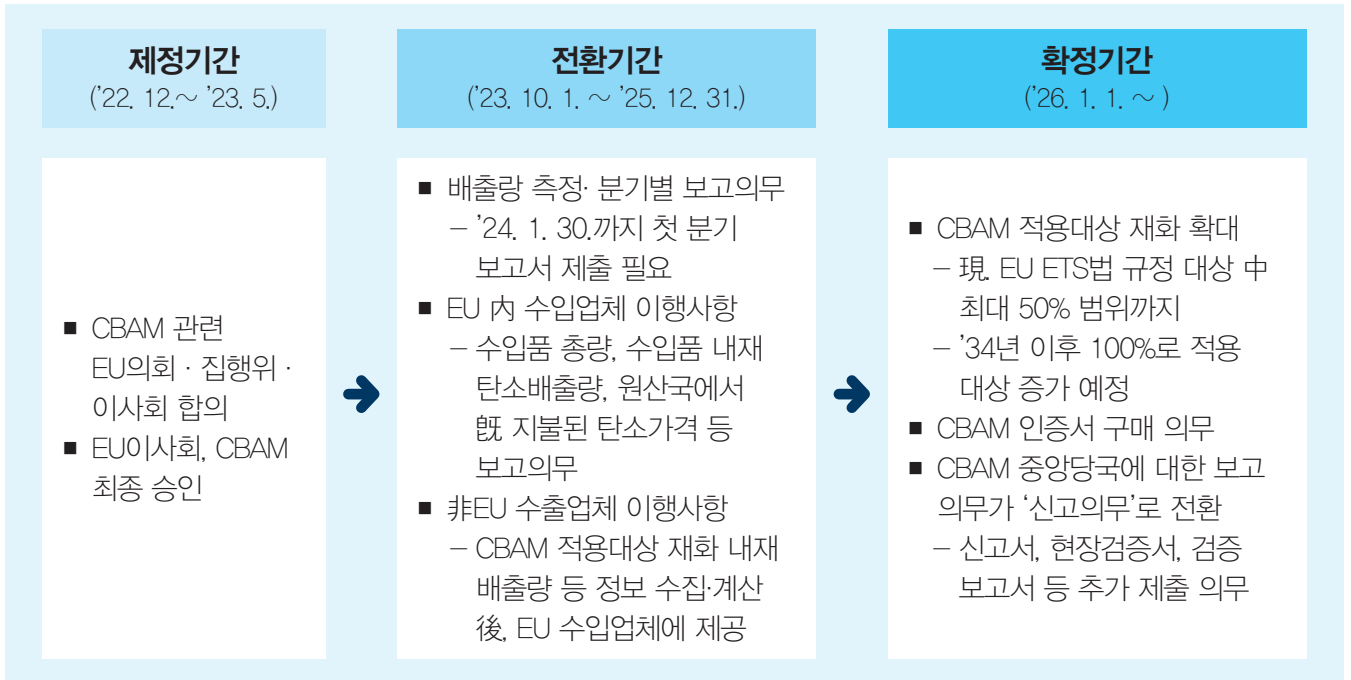
- EU는 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대 이후 EU 회원국 기업들의 ‘영리활동 중 배출하는 탄소량’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e System, “ETS”) 등의 법안을 통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 ▶ **탄소 중립** : 산업화시대 이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을 방지 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를 분해하여 ‘순 탄소 배출량을 0(零)’으로 만들자는 세계적 기조
 - ▶ **EU ETS법** : EU 회원국 내에 지정된 사업체들이 경매를 통해 탄소 등 오염물질을 일정수준까지 배출할 권리(배출권)를 할당받고, 그 일정수준 이하로 배출한 이를 他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 한편 위 규제로 인해 EU 회원국 기업들이 탄소배출 규제의 적용이 없거나 덜한 국가의 기업들과 국제거래를 진행할 때 ▲초과배출에 따른 부가 비용 납부, ▲저탄소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 등의 부담 요인들로 인해, EU회원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무역경쟁력 저하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 이에 EU는 ①EU 회원국 기업들의 경쟁력 보호와 ②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21. 7.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들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들을 상대로 재화 등을 수출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출 과정상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도록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발의했습니다.
- 이후 CBAM은 EU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 간의 입법안 합의를 거쳐 ’23. 10.부터 일부 재화에 대한 무역행위에 시범적용하는 기간(“전환기간”)을 설정해 ’24. 3. 현재 운용 중이며, ’26. 1.부터 적용 대상 재화를 추가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확정기간”) 의결했습니다.

2. EU『탄소국경조정제도』주요 내용

- CBAM의 적용 범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자들의 권리·의무는 「전환기간」(’23. 10. ~ ’25. 12.)인지 「확정기간」(’26. 1. ~)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전환기간」의 경우,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은 현재 ①시멘트, ②전기, ③비료, ④철강, ⑤알루미늄 및 ⑥수소로 총 6개로 지정되었습니다.
 - 위의 원료가 가공되어 수출된 재화를 수입한 EU 회원국 기업은 ▲수입상품 정보, ▲내재배출량 정보, ▲간접배출량 정보 등을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는바, 수출업자인 非EU 회원국 기업은 이에 관한 협조 의무가 부여됩니다(CBAM 이행규칙 제3조, 제7조, 부속서 III 등 참조).

- ▶ **내재배출량** : Embedded Emissions,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
- ▶ **간접배출량** : Indirect Emissions, 제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포함된 온실가스의 양으로,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간접배출량의 대표적 예시임

- 즉, 「전환기간」의 경우 수입업체인 EU 회원국 기업은 상기 사항에 관한 보고의무만을 지니며, 만일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고되지 않은 내재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한편 「확정기간」으로 나아갈 경우, ①CBAM이 적용되는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②CBAM 중앙당국에서 발급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함으로써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게 되며, ③과태료의 산정체계 또한 CBAM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가장 화두가 되는 ‘CBAM 인증서’ 제도란, EU 회원국 기업이 EU로 수입되는 제품을 생산 시 배출된 탄소량에 상응한 양(탄소배출량 1톤당 인증서 1장 발급)만큼 중앙당국이 발급한 인증서를 구매한 후에, 이를 중앙당국에 제출해야만 탄소배출에 따른 추가 과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한편 CBAM 인증서 구입 가격은 EU ETS법이 규정한 탄소배출권 가격에 상응하여 책정되며, ’24. 3. 기준으로 현재 EU의 탄소배출권 1장의 시장가격은 약 60유로(한화 약 9만원)로 측정됩니다.
 - 이에, CBAM 인증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입업체인 EU 회원국 기업이 부담하는 인증서 구입비용은 무역과정에서 수출업체인 非EU 회원국 기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4. 3.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탄소배출권 1장 가격이 약 9천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배출권 가격의 차액을 추가로 부담할 소지가 있습니다.



3. EU『탄소국경조정제도』국내 시사점 및 대응 현황

- CBAM의 도입으로 인해 對EU 철강 수출 5위(무역협회 ’22. 12. 발표자료 기준, 약 44억 달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제강 수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에게 수출 추가 관세에 따른 부담이 예상됩니다.
- 나아가 EU 회원국 수입기업이 지니는 보고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 관한 정보 중 ▲원산지, ▲생산비용, ▲생산공정, ▲상품의 탄소 직간접배출량 정보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는바, 국내 수출기업이 EU 수입기업에게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영업의 중대한 사항이나 기밀자료 등이 전파될 소지도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 및 국민 경제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대외적으로 EU와의 양자채널(’22. 12. 韓-EU 통상교섭본부 양자회의 등)과 다자채널(WTO ‘무역과 환경 대화’ 정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대내적으로도 ▲국무조정실 · 산업통상자원부 주재「CBAM 대응 관계부처 TF」발족(’23. 7. 제2차 TF 개최), ▲민 · 관 공동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설명회(’22년 개최 CBAM 대응전략 세미나 등)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동향 및 시사점 등

- CBAM에 이어, 최근 미국도 연방의회가 초당적 합의로「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을 통과시켜 ’24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예고하며, 주(州) 단위로도 ’23. 10. 캘리포니아주는「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등 관련 법안을 채택해 미국 현지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선진국들이 위와 같이 '탄소 중립'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목표를 동시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효하는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산업이 무역활동의 중심인 국내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규제를 조속히 파악 및 숙지한 후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위 법안과 관련하여 ①EU CBAM 법안 원문, ②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CBAM 현안보고서」 및 ③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편찬한 「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본 게시물과 함께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각국의 탄소 관세 규제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자_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황현준